

區 分	現 行	改 正 案
		<p>債權의 확정에 간한 訴訟行爲를 할 때는 당해 預金者의 授權이 있어야 함.</p> <p>※金融機關의 破產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에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金融機關에 대하여는 이 法의 改正規定을 적용배제(案附 § 2).</p>

나. 檢討意見

(1) 不實豫防을 위해 早期是正措置를 마련하고 自律的合併등에 대한 支援을 強化하는 한편, 金融機關이 不實化된 경우에는 먼저 經營改善措置를 命하고 이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경우 契約移轉의 決定 또는 認可取消 등의 措置를 할 수 있도록 하며, 清算 및 破產節次에 들어간 경우에는 破產法 등에 대한 特例를 인정하여 破產節次를 簡素化하려는 改正案의 內容은 大體적으로 妥當한 것으로 보여짐.

(2) 그러나 案 第2條第3號에서 “不實金融機關”을 定義함에 있어 “債務가 財產을 초과”라는 表現으로 規定하고 있는바, 同 財產이 帳簿上의 財產을 의미하는 것인지 審查 및 評價등을 통한 實質價值를 基準으로 하는 것인지 不分明하므로, 이를 明確히 하여 規定할 필요가 있음. 또한 債務에 대한 支給이 停止상태에 있는 경우 不實金融機關으로 規定되고 있는 바, 豫金등의 債務이외의 債務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를 明白히 할 필요가 있음.

(3) 案 第2條第4號에서 “引受”를 規定함에 있어 引受할 수 있는 者를 “金融機關의 株主가 아니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日程比率이 하의 株式을 가진者”로 制限하고 있는 것은 당해 金融機關의 不實에 直接의 責任이 있는 者를 除外하고자 하는데 그 趣旨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와 같은 취지를 法律에서 明白히 규정함으로써 執行의 混線을 防止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4) 案 第11條第1項에서 不實金融機關에 대한 經營改善措置命令을 규정함에 있어 同命令은 “당해 金融機關의 設立根據가 되는 法律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할 수 있는 바, 당

해 法律의 범위내에서의 命令이라면 굳이 이 法에서 다시 規定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疑問이 있음.

(5) 案 第15條에서는 監督機關이 清算人 또는 破產財產人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銀行法 등 既存法律에서는 清算人 또는 破產財產人을 監督機關이 選任토록 規定하고 있어 이와 相衝의 素地가 있으므로 補完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6. 金融機關을 이용한 企業結合의 制限

(1) 現行 金融關係法에서는 金融機關別로 資產運用의 健全性을 위해 다음과 같이 他社株式取得限度를 두고 있으나, 동일계열 金融機關이 연합하여 他企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規制裝置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改正案에서는 同一系列 金融機關이 타회사를 實質的으로支配하려는 關係가 형성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함으로써 「金融의 產業資本支配」可能性을 방지하기 위해, 同一系列 金融機關이 타회사 주식의 2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타회사 주식의 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이를 金融機關이 속한 기업집단이 제1대주주가 되는 등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財經院長官의 承認을 받도록 하고, 이 경우 財經院長官등은 公正去來委員會와의 協議를 거쳐 승인토록 하려는 것임(案 § 24).

<금융권별 타사주식취득한도>

증 권	보 협	단자·종금	은 행	투 신
5%	10%(5%)	10%(5%)	10%	20%

(2) 이는 지난 6月 財政經濟院과 公正去來委員會가 公正去來法 改正協議過程에서 金融機關間 또는 金融機關을 이용한 企業結合에 대하여는 金融關係法에 반영하되 競爭制限性 여부

는公正去來委와 事前協議토록 함에 따른措置로서, 主要 先進國의 경우 金融業에 대해서도 金融關係法과는 별도로 獨占規制法이 적용

되는 것이一般的임을 고려할 때,公正去來委員會와의 事前協議는妥當한 것으로 봄.

現 行	改 正 案
	<p>—金融機關 및 그 金融機關과 같은 企業集團에 속하는 金融機關(이하 “同一系列 金融機關”)은 다음 각호의 1의 行爲를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미리 財政經濟院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함. 다만, 당해 金融機關의 設立根據가 되는 法律에 의하여 認可·承認 등을 받은 경우例外.</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會社의 議決權 있는 發行株式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所有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議決權 있는 發行株式 總數의 100분의 5이상을 所有하게 되는 경우로서 동일계열 金融機關 또는 동일계열 金融機關이 속하는 企業集團이 당해 會社를 사실상 지배한다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p>—위에서 “企業集團”이라 함은 獨占規制 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第2條第2號의 规定에 의한 企業集團을 말하며, 財政經濟院長官은 위 规定에 의한 承認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株式所有가 관련 市場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하여公正去來委員會와 미리 協議하여야 함. 위 但書條項에 의하여 認可·承認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러함.</p> <p>※獨占規制 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2(2))</p> <p>; “企業集團”이라 함은同一人이 다음各目的區分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사실상 그 事業內容을支配하는 會社(第1號에規定한 事業외의 事業을 영위하는 會社를 포함한다)의 集團을 말한다.</p> <p>가.同一人이 會社인 경우 그同一人과 그同一人이支配하는 하나 이상의 會社의 集團</p> <p>나.同一人이 會社가 아닌 경우 그同一人이支配하는 2이상의 會社의 集團</p> <p>—다른 企業의 株式所有限度에 대한 經過措置: 이法 시행 당시 金融機關이 그 設立根據가 되는 法律에 의하여 隣家·承認 등을 받아 다른 會社의 株式을 取得 또는 所有하고 있는 경우에는改正規定(§ 24①但)에 의한 承認을 받은 것으로 봄(案附 § 3)</p>